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가축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록증 발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9서식에 따른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의8서식, 별지 제35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 등) ① (생략)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u><신 설></u>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9서식에 따른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자	① 조합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신청내용	⑤ 가축시장명	⑥ 개장 일자		
	⑦ 소 재 지	⑧ 거래 대상 가축의 종류		
	⑨ 거래방법	[]전자경매 []수기경매 []중개		
	필수 시설	⑩ 계류시설	면적(㎡):	계류마릿수(마리):
		⑪ 경매시설	[]전광판 []응찰기 []방송시설	
		⑫ 소독시설	차량(터널형, 개):	대인(밀폐형, 개):
		⑬ 체중계	큰소·송아지 겸용(개):	
			큰소용(개):	송아지용(개)
	⑭ 사무실	면적(㎡):		
	부수 시설	⑮ 주차장	면적(㎡):	주차대수(대):
⑯ 휴게실		면적(㎡):		

「축산법」 제34조제1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시장의 개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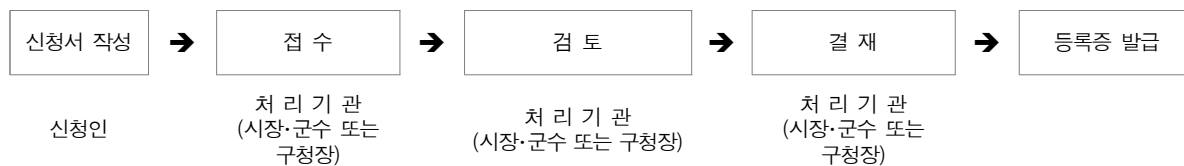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⑤란에는 가축시장 소재지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 적습니다.
2. ⑩란 계류~~마~~릿수에는 큰소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⑪란에는 전자경매 거래방법의 가축시장인 경우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가축시장 등록증

1. 가 축 시 장 명:
2. 조합 또는 법인명:
3. 소 재 지:
4. 거래 대상 가축의 종류:
5. 시 설 현 황

계류시설(㎡)		사무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축산법」 제34조제1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시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